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55
----------	-------

발의연월일 : 2026. 4. 2.

발 의 자 : 윤종오·손 솔·전종덕
민병덕·임미애·이광희
정혜경·김준형·황운하
김태선·이주희·용혜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송사업의 면허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면허의 기준은 안전성, 수송수요, 재정적 능력 및 차량 등 기본적 요건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특히 GTX 등 광역철도와 같이 공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철도운수종사 인력의 근로조건·처우 및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제도적 관리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 수행 인력에 관한 기준을 면허요건에 포함하도록 하여 안전한 철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철도운수종사자의 건강 및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무형태·인력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운수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면허의 기준)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6조(면허의 기준) ①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u></p> <p>② <u>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철도운수종사자의 건강 및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무형태·인력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운수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p>